

## 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168 적금』 특약(구 하나은행)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약관명에 구행명 삭제, 조항명 변경, 가입대상에 개인사업자 추가, 행명 변경, 조문 삭제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<b>『168 적금』 특약(구 하나은행)</b></p> <p><b>제 1 조 약관의 적용</b>                      “168 적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“<u>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</u>”, “<u>적립식예금 약관(구 하나은행)</u>”, “<u>외환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</u>”을 적용합니다.</p> <p><b>제 2 조 가입대상</b>                    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<u>실명의 개인</u>으로 하며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.</p> <p><b>제 3 조 ~ 제 6 조</b>                      (생략)</p> <p><b>제 7 조 이자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② 고객이 ~ (중략) ~ 다만, 해지 시 고객이 미화환산 1,000달러 이상 <u>하나은행</u>에서 ~ (중략) ~ 지급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③ ~ ④ (생략)</p> <p><b>제 8 조 기타</b>  <u>위 특약 사항은 변경 시 변경사유,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 합니다. 단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 제21조 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합니다.</u></p>	<p><b>『168 적금』 특약</b></p> <p><b>제 1 조 적용범위</b>                      “168 적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<u>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, 『적립식예금 약관』 및 『외환거래 기본약관』</u>을 적용합니다.</p> <p><b>제 2 조 가입대상</b>                    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<u>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</u>로 하며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.</p> <p><b>제 3 조 ~ 제 6 조</b>                      (좌동)</p> <p><b>제 7 조 이자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(좌동)                      ② 고객이 ~ (중략) ~ 다만, 해지 시 고객이 미화환산 1,000달러 이상 <u>KEB하나은행</u>에서 ~ (중략) ~ 지급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③ ~ ④ (좌동)</p> <p><u>(삭제)</u></p>	<p>구행명 삭제</p> <p>조항명 변경</p> <p>구행명 삭제</p> <p>가입대상 추가</p> <p>행명 변경</p> <p>조문 삭제 (내용 중복)</p>